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61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안상훈 · 김 건 · 윤영석  
윤재옥 · 김종양 · 배준영  
박성훈 · 박덕흠 · 안철수  
한지아 · 박형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적절한 방식으로 배출·수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11제1항 및 제83조의13).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6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11제1항 중 “의약품등의 판매, 구매, 표시·광고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의약품등의 판매, 구매, 표시·광고, 배출·수거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로 한다.

제83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13(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 실시 등)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폐기를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유통기한의 경과,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의 수거,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 개설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 개설자의 선정 기준·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216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p> <p>제83조의11(소비자 교육 및 홍보)</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의약품등의 판매, 구매, 표시·광고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u>를 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216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p> <p>제83조의11(소비자 교육 및 홍보)</p> <p>① ----- ----- ----- -----</p> <p><u>의약품등의 판매, 구매, 표시·광고, 배출·수거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83조의13(<u>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 실시 등</u>) ① <u>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폐기를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유통기한의 경과,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의 수거,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p>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 개설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 개설자의 선정 기준·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